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 쟁점과 대안 모색

이종석*

❖ 요약 ❖

오늘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본격적인 공론의 장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현재 논의는 학계와 정부 등에서 평화체제의 성격, 조건, 실현전략 등을 둘러싸고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과제는 이 논의 과정에서 주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의 관계, 평화협정의 주체, 종전선언의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름대로 대안적 정리를 시도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 필자는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주체이자 당사자는 남북이나, 이 평화체제의 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중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논리적, 전략적 차원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가 아니라 당사국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계기적 이벤트라는 인식에 기초해서 문제를 진단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 당사조건 등을 잘 살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4자 정상선언은 종전선언이라는 용어 대신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상선언'이나 기타 그에 부합한 다른 이름을 찾아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 문제의 제기

한국전쟁이 끝난 후 지난 54년 동안 한반도는 정전체제를 유지해왔다. 비록 전쟁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적대와 대립의 관계가 한반도 안보질서를 규정해왔다. 지속되고 있는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위기의 고조 등은 이 안보질서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 이 불안정한 평화를 종식시키려는 노력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02년 10월에 재발해서 한반도 안보정세를 뒤흔들던 북핵

『세종정책연구』 2008년 제4권 1호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문제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가면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는 위기 속에서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공간을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진시켜 통일을 실현하는 일은 역대 한국정부의 일관된 국가목표였다. 특히 「국민의 정부」때부터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혹은 다른 말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을 당면 기본 목표로 삼았으며, 참여정부에서는 “불안정한 정전상태 종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비전 아래 이를 국정과제로까지 제시하였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3, p. 35).

그러나 2005년 전반기까지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노력은 북한 핵문제에 가로막혀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평화체제논의도 국내외적으로 공론의 장(場)에서 활발하게 의제화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돌파구가 열렸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면서 공동성명 제4항에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명기한 것이다.

9·19 공동성명의 이 내용은 2007년의 2·13 합의에서도 재확인되었다. 2·13 합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적 수준에서 실천해야 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거의 다 포괄하여 명시하였다. 주지하듯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와 북미 간의 적대상태로 특징되는 대결구조의 해체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데, 2·13합의서는 미국과 북한이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초기조치들을 명기하였으며, 미국-북한 및 일본-북한간의 관계정상화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형성을 논의할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렇듯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는 평화체제의 논의와 방법론에 대해 일정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사항을 정책의제로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이 논의의 국내외적 공론화에도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9·19 공동성명의 합의과정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후 평화체제 논의의 핵심당사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기도 하였다.

남북관계도 2000년의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2000년 이후 두드러진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증진, 북한 주민의 대남적개심 완화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2007년 10월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남북한 간의 공식적인 실천 의제로 만들었다. 이 때 남북정상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제 4항).

이상의 국내외적 배경아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오늘날 공론의 장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현재 논의는 한국의 학계와 정부를 중심으로 평화체제의 성격, 조건, 실현전략 등을 둘러싸고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의 관계, 평화협정의 당사자, 종전선언의 내용과 시기 등을 둘러싸고 조금은 혼란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논의가 분분한 실정이다. 이 쟁점들은 평화체제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들이기도 해서 지속적인 논의 진전을 위해서는 시급히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이 논문은 바로 이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평화체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아니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쟁점들에 대해서 대안적 판단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리고 독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제출된 학계의 연구 성과들 중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수용하고, 여기에 필자의 정책현장 경험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체계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II.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상호관계의 설정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이 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 두 개념 각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치된 견해가 있어왔다. 문제는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이 전체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다소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평화협정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거나, 사실상 평화가 가능하다면 평화협정을 건너뛸 수 있는 것으로 보거나, 부지불식간에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의 실현조건을 동일시하는 경향 등이 나타났다.

먼저 평화체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로 이해된다. 정치학 사전은 이를 프랑스의 정치사회학자 아롱(Raymond Aron)의 말을 빌어 “정치적 단위간의 대립의 폭력형태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정지되고 있는 상태”(정인홍외, 1984, p. 1642)로 정의하고 있으며, 백과사전은 “인간집단(종족·씨족·국가·국가군) 상호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두산동아, 2002, p. 575). 그리고 갈통(Johan Galtung)은 평화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전쟁의 반대개념으로서 물리적 폭력이 부재한 상태를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로, 전쟁의 근원이 되는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여 집단 간의 협력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보고 있다(Galtung, 1968, p. 487).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체제의 구축은 ‘안정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배열과 불안정한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규범, 원칙, 정책결정의 절차들을 형성해가는 것’이라는 두 가지 시각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문정인, 1999, pp. 140-141; 최영중, 2007, p. 10). 그리고 아직 전쟁상태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를 모색해야 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체제는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평화협정과 평화협정 이후 전쟁의 재발 방지, 전쟁위협의 영구적 제거를 관리하는 사회적 제도’로 구성된다(이근, 2007, p. 29). 즉, 한반도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정전상태의 종식이라는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함께 평화를 구축해나간다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중첩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전쟁의 법적 종결 및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한편, 남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적대적 긴장관계를 초래했던 제반 긴장요인들을 완화, 해결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정

1) 이와 동일한 맥락의 규정들로는 이상현(2006), p. 153; 박건영(2006), p. 172.

착을 위한 제도적 발전이 실현된 상태' 정도가 될 것이다(조민, 2007, p. 83).¹⁾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다른 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냉전구조의 해체를 의미한다. 남북의 불신과 대결관계, 북한의 경직성과 폐쇄성,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와 북한의 핵 개발, 남북의 군사적 대치, 정전체제 등이 한반도 냉전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평화를 방해하는 핵심요인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이러한 대결적 요소들을 해소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적인 조건, 즉 실현상태의 지표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나? 그것은 앞의 서술에서 시사된 것처럼 법률·제도적 차원에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이며, 실질적 차원에서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북미 간 적대관계 해소 및 관계정상화가 되리라고 본다(이종석, 2007b, p.23). 물론 이러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현안이 되어 있는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조건을 이처럼 규정하는 경우 '남북간 군사적 대결 해소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라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남북한 간의 적대적 대결해소는 남과 북의 군대가 현재의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맞서고 있는 적대적 대치상태를 푸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기존의 휴전선과 북방한계선이 평범한 남북경계선으로 전환되며, 또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계 방식과 적정 경계 병력으로 대치전력을 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남북한 상호간에 평화 상태에서 필요한 적정 군사력에 합의하고, 이에 맞추어 군비축소를 포함한 군비통제를 실현하는 상태를 뜻한다. 아마 이러한 상태가 실현되는 과정은 필시 남북한의 경제, 사회적 교류와 통합성의 증대를 수반할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사회분야에서의 관계진전이 평화체제의 심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평화체제 실현의 기본 전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평화체제의 기본 전제요소들은 정치, 군사 분야에 집중되며, 이 분야에서의 진전이 자연스럽게 경제사회분야와 상호 순기능적 영향 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관계 정상화에서는 무엇보다도 양국 간에 기존의 적대관계를 상징했

던 제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부터 그동안 대북억지력의 한축을 이루었던 주한미군의 성격변화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역시 공공연히 미국을 적대세력으로 표방하고 구축해온 사회적, 군사적 동원 체제를 재편해야 한다. 나아가 양국 간의 국교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와 마찬가지로 북미 간에도 인적, 경제적 교류가 동반하여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서 이 정도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수준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평화체제가 중단기적으로 특정시점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가는 장기 목표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번에는 평화협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은 '현재의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그 어떤 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일방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이라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필수적인 중간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식과 그로 인해 전개되는 평화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즉, 평화협정은 단순히 전쟁을 끝낸다는 종전의 의미를 넘어서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평화에 장애가 되는 분쟁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면서 상호적인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합의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이삼성, 2005, p. 33).

평화협정을 이처럼 규정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협정 속에 정전상태의 해소를 위해서 전쟁 종결과 평화상태 회복 합의, 당사자들 간 상호 불가침 및 무력행사 포기, 비무장 지대의 일반 경계선화에 따른 관리 규정 마련, 기존 휴전선에서의 대결적 군사관계의 실질적 해소 조치 등을 명기해야 하고, 평화구축을 위해서 평화관리기구 설치, 향후 군비통제 방향 등도 본원적인 요소들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협정의 핵심 구성요소들은 전쟁을 종결짓는 선언적 합의 이외에, 실천을 요하는 나머지가 사실상 군비통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종결이 합의된 만큼 그에 맞추어 어떻게 대결적 군사관계를 해소하고 평

화적이며, 비대결적인 군사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이 평화협정의 핵심인 것이다.

평화협정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군비통제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협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군비통제 항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²⁾ 군비통제란 군비경쟁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광의적으로 군사력의 건설, 배치, 운용, 사용을 확인하거나 제한, 금지, 축소하고, 합의사항을 실천하고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을 감소시켜 안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일컫는다. 이에 비해 군비축소는 이미 건설된 군사력의 수준을 양적 또는 질적으로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다(송대성, 1996, pp. 25-26). 일부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기도 하나(문정인, 1999, pp. 145-146)³⁾ 여기서는 군비축소를 군비통제의 부분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군비통제의 최종적 목표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랐다.

군비통제는 배치전력의 성격, 즉, 배치 형태, 시기, 장소 등에 관해 통제를 가하고 군비운용의 안정조항 등을 상호간에 점검, 합의함으로써 우발적 전쟁 발발을 막는 군비의 운용상 통제와 군비제한과 전력수준의 감축과 같은 본질적이고 높은 수준이 통제를 의미하는 구조적 통제로 나누어진다(문정인, 1999, p. 145). 이렇게 볼 때, 평화협정 체결은 최소한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남북전력의 재배치를 포함하는 운용적 군비통제가 실현되거나 실현이 약속되어야 가능하며(임동원, 2007),⁴⁾ 구조적 군비통제의 실현은 평화체제의 심화과정과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⁵⁾

한편 평화협정은 이상에서 살펴본 본원적 구성요소들만으로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의되고 협정이 체결되려면 전쟁과 분단봉합으로 이어져온 '역사적 원인 해소'와 '현실적 대립관계의 해소'를 위해서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의 정상화라는 외재적 전제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⁶⁾ 이러한 차원에서 평화협정이 가능한 북미관계는 완전한 관계

2) 이러한 관심은 후술하게 될 종전선언의 실현조건과 관련해서도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본다.

3) 문정인은 군비통제와 군축을 분석적으로 다른 이론적 연원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리하고 있다.

4) 임동원 진통일부장관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군대로부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 그 지위와 역할을 변경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 역시 평화협정 과정에서 실현해야 할 군비통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5)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의 군비통제전략에 대해서는 한용섭(2006) 참조.

정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호 적대관계의 해소의 실현을 전제로 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그렇다면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미 논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듯이,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평화체제구축의 한 과정, 즉 부분집합이며, 일방의 붕괴라는 예외적 상황을 논외로 한다면 평화체제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장기간의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구축을 거쳐서 군비통제 및 군축 등 평화정책의 실질적 과정이 진행된 최종단계를 의미한다(조민, 2007, p. 83). 따라서 한반도에서 일방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장구한 세월에 의존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해 나아갈 때, 평화협정 체결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협정이 적대행위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평화제도화의 중요 전기가 되며 국지충돌의 전면전 확산 방지라는 차원에서 항구적 평화체제와 순기능관계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평화협정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백승주, 2006, pp. 263-264)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는 하나, 자칫 평화협정이 평화체제 구축의 장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본질적이며 내재적 단계라는 점을 놓칠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즉, 평화협정은 단순히 기능적 차원에서 평화체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제도화의 한 부분인 것이다.

한편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한, 북미 간 대결구도의 상징이었던 한반도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기존의 정전협정을 대체하여 맺는 ‘협정’, 즉 평화체제 완성의 의미로서 평화협정이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정전협정을 종료시키기 위해 맺는

6) 이상희 장군은 북한의 남침으로 야기된 분단과 불안정한 안보상황을 염려하여 ‘미국의 지지로 얻어지는 충분한 억지력에 바탕을 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안정’을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Leesanghee, 2007, pp. 11-12), 그것은 평화협정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해야 하는 본원적 요소라기보다는 평화협정의 공고한 실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것이다.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에 대한 개념규정과 상호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이후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 평화체제의 주체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 여부와 긴밀히 결부되며 논의되어 왔다. 그것은 북핵 문제 해결없이 평화협정이 불가능하리라는 상황론에도 근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 등에서 이미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6자회담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역설적으로 북핵문제의 재발과 그 해법 강구를 위해 만들어진 6자회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주지하듯이 한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부시행정부의 등장(2001년 1월)과 북핵문제의 재발(2002년 10월)등으로 인해 이를 국제사회에 실천적으로 의제화 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미 간에도 그동안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6자회담 본회담에서는 제기하지 않았으나, 미국과의 접촉에서는 간헐적으로 언급해왔으며, 미국은 1, 2차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되면 6자회담을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원론적 수준에서 표명하였다.⁷⁾ 사실 논리적으로 볼 때 북핵 폐기와 북한의 안전보장(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행동 대 행동”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 논의가 너무 뒤쳐져서도 안된다.

때마침 2005년 여름에 들어서면서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인식이 넓어지고 있었다. 제4차 6자회담 개최 직전인 2005년 7월 중순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한국 측에 밝혀왔다.⁸⁾ 이에 한국정부는 미국의 평화체

7) 평화협정 관련 한미와 북한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조민(2007) 참조.

8) 아마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고, 핵포기 이후 한반도에 대한 구상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수 있다. 한편 북한 측은 2005년 7월초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양자 접촉에서 “북미관계가 적대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 협의 제안을 환영하고 이를 의제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평화체제 협의의 핵심인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가 6자회담에서 다루어질 것에 대비해 그 유불리(有不利) 점들을 식별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때, 정부는 한반도 문제가 지나치게 국제화되는 것을 차단하면서도 북핵문제의 진전과 병행하여 한반도에서 평화를 적극 증진하고, 북핵 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순기능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7월 하순에 6자회담 한국대표단이 준수해야 할 평화체제 관련 정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제4차 6자회담에서 제기될 경우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대응하되, 구체적인 협의는 6자회담 틀보다는 당사국간 별도의 협의 틀에서 진행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가도록 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별도의 포럼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전개될 시 우리 입장에서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의 전제가 견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침으로 만들었다. 첫째,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미 양자 사안이며,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더욱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⁹⁾ 둘째, 평화협정 후 휴전선에서 남북한 경계선으로 바뀔 분단선은 남북이 공동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한국전쟁으로 성립한 유엔사의 공식적인 해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휴전선은 정전선이 아닌 평화의 경계선이며 통일을 위해 언젠가는 해소되어야 할 선(線)으로서 이 관리는 더 이상 유엔과 북한이 아니라 한국군과 북한군이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¹⁰⁾ 정부는 이 두 원칙이 지켜지는 한 한국의 참여를 전제로 평화체제 논의의 형식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립하였다.

9)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대외 선전용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으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그 철수가 아니라 지위와 역할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 직접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중요한 증언이 있다(임동원, 2007).

10)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이 문제 논의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III. 평화협정의 주체: 당사자 문제

1. 남북당사자주의의 한계와 탄력적 접근의 필요성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그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 목표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북한은 북미평화협정을 주장해왔다. 반면에 우리 학계에서는 그 대칭으로서 남북평화협정과 미국, 중국의 보장이라는 이른바 '2+2' 방식이 통설로서 자리잡아왔다. 평화협정은 남북이 맺고 4자회담을 통해 미중이 이를 보장한다는 '2+2' 논리는 문민정부 이래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주장에 대응하여 정부와 학계¹¹⁾ 모두에서 남북당사자주의와 같은 뜻으로 이해되면서 “우리의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학계에서는 평화체제와 관련한 훌륭한 논문들이 다수 제출되었지만 그 대부분이 남북평화협정을 하나의 원칙처럼 받아들이면서 미국이 협정 당사자로 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결론을 내려왔다(이삼성, 2005, p. 16).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평화체제 문제에서 남북한 당사자 원칙의 확립은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지지 협력하는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 확립을 위해 경쟁하는 주변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향후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체제 통합과정에서 주변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종철, 2006, p. 121).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한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사실과 남북한만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논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은 남한이 정전협정 체결에 참가하지 않았고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북미평화협정을 주장했었다(김일성, 1986, pp. 57-59, 76.3.28. 일본 “세

11) 그동안 학계에서 남북평화협정을 기본으로 '2+2' 논리는 통설적 주장이었다. 박종철(2006), 박명림(2004) 등 참조.

카이” 지와의 회견). 그러나 남한이 한국전쟁의 실제적인 당사자이며 현재 한반도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중요 군사력 보유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점에서 평화협정의 일 주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한만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남북 당사자주의는 설득력이 약하다. 남북당사자 원칙은 높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틀에서는 지금까지 정전체제의 중요한 축이 되어온 미국과 북한의 관계, 좀더 협의적으로는 주한미군과 북한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문제를 고려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이종석, 1998, pp. 127-128).

우리는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말한다. 그것은 북미간의 적대적관계의 해소와 정상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전쟁의 연장선에서 중단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과의 전쟁(중단)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뜻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어떤 형식이 되든지 평화협정의 중요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당연히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¹²⁾ 더욱이 정전체제의 해소 후에도(즉,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상정하는 상황에서는 북미간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명시적인 합의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남북평화협정을 합리화하고 북미평화협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반드시 평화협정의 당사자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들여 설명을 하려하면서도 정작 정전협정의 당사자였던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삼성, 2005, p. 16)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편 ‘2+2’에서 미국과 중국을 ‘보장자’로 한다는 것도 자칫 미중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당사자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남북한에 대해 감독자와 이행강제자의 위치에 서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있다(이삼성, 2005, pp. 24-25). ‘미중 보장론’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고 그 긴

12) 4자 평화협정을 주장한 주목할만한 연구로서는 이삼성 “한반도 평화협정: 북한 핵문제 근본 해결로서의 평화협정의 특과 윤곽”,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군축 방안>, 평화통일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2005.10.7); 정성장(2007) 등 참조, 한편 백승주박사는 조약 당사자 문제에서 한반도 평화유지에서 미국과 중국의 위상과 역할차이를 지적하며 남북한과 미국의 3자 협정을 바람직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백승주, 2006 pp. 267-268).

장구조의 당사자 위치로부터 미국을 비켜설 수 있게 만드는 담론적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미국을 한반도 긴장구조의 한축이 아니라 그 구조 밖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한다는 것이다(이삼성, 2005, p. 31). 사정이 이렇다고 ‘보장’ 대신에 미중이 중재자 역할만 한다면 그것은 자칫 이들 국가들이 저야 할 책임은 없고 자신들의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른바 ‘남북당사자’들에 대해 그들이 요구할 것은 최대한 요구하는 과정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이삼성, 2005, p. 27).

결론적으로 평화협정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엄연히 정전협정 당사자이며, (특히 미국의 경우) 지금도 한반도 문제에 중대한 변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과 미중의 4자 협정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남북한과 미중의 4자 기본협정을 맺고, 4자안에서 남북간, 북미 간 혹은 다른 필요한 당사자끼리 부속협정식의 쌍무협정을 함께 맺는 이원적 방식도 고려해볼직 하다(이종석, 2007a, p.3). 중국이 양해한다면 4자 회담에서 남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도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결국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는 어느 하나를 배타적으로 고집하기 보다는 한국이 배제되지 않는 한, 열린 자세를 가지고 관계국들 간에 논의를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느 것이든 평화협정의 효과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당사국들 간의 신뢰와 평화를 향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2+2’는 우리가 북한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북미평화협정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처럼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상의 맥락에서 9·19 공동성명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럼에는 남북한 미중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¹³⁾ 현실적으로 북미 협상과 남북협상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정성장, 2007, p. 141). 이 경우 북미협상에서는 양국간 적대상태의 종식과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문제 등이 협의되고, 남북한 간에는 남북한 군사적 적대상태의 해소를 위한 실질적 남북경계선에 대한 공동관리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13)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중국은 적극 참여할 의사를 누차 밝힘으로써 자신이 4자 회담의 한 축이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중국당국의 최근 언급은 2007년 10월 9일자 류첸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참조, 『연합뉴스』 2007년 10월 9일.

한편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를 합리적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예컨대, 당사자의 숫자 문제를 분배와 이행문제로 보면서, 분배문제가 심각할수록 참가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행문제가 심각할수록 줄어든다. 따라서 분배문제와 관련해서 참가국 숫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상대적 이익에 대한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또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행문제와 관련해서는 집합행동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참가국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도의 합리적 디자인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접근하자는 것이다(최영중, 2007, p. 23).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진공상태에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평화체제 세우기를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당사국 문제가 현재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적 연원을 지닌 문제이며, 정전체제의 성격과 현재 이 체제에 미치는 세력들의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역사적 정치동학적인 다차원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평화체제 논의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주체와 평화협정 당사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적절하게 국제협력을 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외세 개입을 막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역사적,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평화협정은 4자(혹은 3자)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한 체결, 미중 보장이라는 ‘2+2’ 구도는 오히려 외세가 평화체제의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한반도 통일단계에까지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도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의 해소와 평화협정의 체결 단계까지는 미중이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지만, 그 이후의 한반도 평화체제의 심화과정과 통일진입에서 발생하는 제반 국제적 요소들은 미중 보장이 아니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질서 속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평화협정 이후 평화체제 심화단계는 명실상부하게 남북한만이 주체이자 당사자이며, 이때부터 한반도 문제는 특정 강대국들이 배타적 개입통로를 갖는 구조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협력구도 속에서 논의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2. 평화협정 당사자 관련 논의 전개과정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 한미의 입장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먼저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1973년 이래 시종일관 북미평화협정 체결이었다. 그러다가 9·19 공동성명을 계기로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북미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도 사실상 남한 혹은 남한과 중국이 참가하는 평화협정에 대해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62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주한미군 철수 후 상호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주장’ 하였다(김일성, 1982, pp. 477-478). 그리고 1973년 3월 15일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기초발언을 통해 외국군대철수와 10만 이하 군축과 함께 남북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1973년 12월 31일 김일성은 그해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6.23 선언을 ‘분단 고착화 책동’으로 비난하면서, 미국 등 외세개입으로 남한의 한반도 문제 해결 능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북미평화협정을 주장하였다(김일성, 1984, pp. 626-642).¹⁴⁾ 같은 맥락에서 1974년 3월 2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명의의 대미서한을 통해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공식 제의하였다.

한편 북한의 이러한 평화협정 공세에 대응하여 미국은 1975년 9월 키신저 국무장관의 유엔연설총회에서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제안했으며, 1979년 7월 박정희-카터 대통령 회담 후 남북미 3당국 회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제의를 거부하고 북미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미 직접 협상 촉구하였다. 그리고 1984년 1월 10 일에는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간 불가침 선언 체결을 위한 3자회담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기존 북미 직접협상, 남한배제 입장을 약간 완화하여 한반도 문제 논의에 남한 참여를 수용하되, 북미평화협정의 입장은 고수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렇듯 자신들의 지속적인 북미평화협정 제의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자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기존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피하면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북미협상을 제의하였다. 이에 한미양국

14) 당시 김일성은 남한이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도 아니라면서 남한의 평화협정 당사자의 지위를 부정하였다(김일성, 1986, 76.3.28, 세카이 지와의 회견).

은 북한의 일방적인 북미평화협정과 새로운 정전체제 무력화 전략에 맞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남북한과 미중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제안하였으며, 마침내 1997년 12월에 본 회담이 성사되었다. 이 회담은 1999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으나,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우선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북한의 반복되는 주장으로 6차 본 회담을 마지막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4자회담 제6차 본회담 직전인 1999년 7월에 한국 측에 4자 협정, 남북 협정, 북미 협정 등 3개 협정을 한꺼번에 연동(interlocking)체결하는 구상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은 남북평화협정을 주장하는 한국의 반대로 이 제안을 본회담에서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평화협정 주체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남북평화협정론을 지지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이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4자 범위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실 9·19 공동성명 이후 종전선언문제가 제기되는 최근까지 미국이 3자 혹은 4자가 참여하는 평화협정 혹은 종전선언을 선호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북한은 2002년 10월 북핵문제 재발 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헐적으로 주장해왔다(박길연 유엔대표부 수석대사, 『조선일보』2004. 7. 20). 그러다가 2005년부터 남북미 평화협정의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으며,¹⁵⁾ 제4차 6자회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측에 ‘남측의 평화협정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정부가 평화협정 당사자와 관련해서 기존의 남북평화협정에서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제4차 6자회담 직전이었다. 사실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은 ‘2+2’였다. 당시 인수위원회는 평화협정의 방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정부 입장을 답습하여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변 2국(4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p. 49). 이어서 2004년 3월 발간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을 공식화한 <평화번영

15) 2005년 2월 한성렬은 주미한국대사관 고위 외교관에게 남북미 3자간 평화협정 문제 제기한바 있다.

과 국가안보)에서는 ‘2+2’를 약간 완화하여 “남북이 중심이 되고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보장하고 적극 동참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식의 과도적 표현을 사용하였다(국가안전보장회의, 2004, p. 37). 이러한 표현은 당시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며, 정부 내에서 역사적, 논리적 맥락에서 4자가 동등한 협상주체로 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NSC 사무처의 판단과 기존 부처들이 견지해왔던 ‘2+2’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충적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한국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2005년 7월부터였다. 이때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하여 평화체제 문제의 제도적 핵심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의 성격상 국제적으로 누구나 이 문제에 참가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즉, 제한적 국내문제이듯이 제한적 국제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나라나 기구가 한반도 평화문제에 직접 개입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에 직접 관련이 있고, 또한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국가들로 제한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판단아래 정부는 대체로 남북한과 정전협정의 직접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정도가 평화체제 논의의 당사자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하되, 협의 범위를 책임 있는 당사자들로 제한하기 위해서 6자회담과는 별도의 포럼에서 다룬다는 입장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다. 그 결과는 9·19 공동성명 제4장에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명기되었으며, 2·13 합의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별도의 포럼”에서 평화체제 논의의 핵심이 될 평화협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논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실현이 난망한 남북평화협정이나 우리로서는 수용 불가능한 북미평화협정을 넘어서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협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9·19 공동성명이 체결되는 2005년 가을 평화협정 참여주체를 남북미(중)으로 하고 협상의 최종결과물로서 남북미(중)간 기본협정을 체결하며, 필요시 부속협정으로 남북, 북미간 협정 등

쌍무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개념을 담은 페이퍼(concept paper)를 준비하여 미측과 협의하였으며, 미국도 이에 동의하였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참여에 대해 공감하였다.¹⁶⁾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한국 측이 미측에 제시한 안은 앞에서 언급한 제4차 6자회담 직전 미국이 한국에 제시했던 구상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IV. 종전선언: 성격과 시기문제

종전선언이란 전쟁상태의 종식을 선언하는 행위로 이를 보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동반하거나, 혹은 그 내용이 평화협정의 성격을 지녔거나, 아니면 최소한 실질적으로 전쟁이 종식된 상태에서 평화협정 전에 전쟁종결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밝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정(혹은 조약)을 맺을 때 당사자들은 전쟁의 종식을 선언적으로 협정에 담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종전을 선언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하나의 이벤트를 구성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요한 계기적 행사로 부각되어 있다. 그 발단은 2006년 11월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적극 나서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권유에 대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결심한다면 자신과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전쟁을 종결시키는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하고, 이것이 내외에 ‘종전선언 용의(用意)’로 알려지면서부터였다. 당시 부시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히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발언 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에 앞서서 성사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가 동시 진행되기를 바라는 한국정부는 이 선언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했으며, 실제 논

16) 이러한 한미 간 인식공유는 9·19 공동성명에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위한 별도포럼의 구성 국가가 남북한과 미중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2007년 10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정상이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더욱 커다란 당면 이슈가 되었다.¹⁷⁾

현재 한반도적 의미에서 종전선언은 지난 50여 년간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해온 정전체제를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결정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의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그보다 한발 앞서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계기라는 입구론적(入口論的) 차원에서 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종전선언의 시기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고, 이 용어의 지적재산권을 가진 미국과 한국정부 간에도 일정한 차이가 노정되었다. 특히 종전선언은 한국정부가 이를 위해 남북한과 미중의 4자 정상선언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논란에 쌓였으며,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한가?”를 두고 정부 내 고위 당국자들 간에도 혼선이 빚어졌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청와대는 “남북정상 선언문에 담긴 3,4개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며 “평화협정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로서, 그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정상들이 모여서 선언을 해야 하는 데,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이라며 당면해서 이 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발언, 『연합뉴스』2007. 10.24). 이러한 입장은 “종전선언은 국제법적 효력여부와 상관없이 내용상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현재 종전선언 채택시기에 대한 논란의 요체는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종전선언을 채택하여 평화체제 협상 착수의 계기로 활용(입구론)할 것인지, 아니면 평화협정 체결의 마지막 단계에서 채택하여 평화체제구축을 확인(출구론)할 것인지 여부이다”라며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볼 때 미북 및 남북간 불신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남북간 평화관리체

17) 2007년 남북정상선언의 종전선언 관련 합의의 의의에 대해서는 고유환(2007), pp. 66-70; 정성장(2007) p. 137; 김성배(2007), p. 22 참조.

제 구축 등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행조치로서의 종전선언 추진의 당위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김만복 국정원장, 『국정브리핑』 2007.10.30)¹⁸⁾이라는 주장으로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종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정치적, 군사적, 법적 조건이 갖춰져야”하고,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평화협정이나 다른 형태의 관계정상화 협정 등의 문서에 항상 첫 부분에 나온다.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나오는 것”(송민순 외교부장관, “장관 내외신 브리핑,” 2007.10.24)이라며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시기적으로 일치시키는 원론적 입장에서 현 단계 종전선언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미국은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 논의의 선결조건은 북한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버시바우 주한미대사, 『연합뉴스』 2007.10.8), “한국전쟁 종식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정상화는 북한의 핵폐기 협정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고든 존드로 NSC대변인, 『연합뉴스』 2007.10.25)는 입장 표명으로 북핵 폐기에 거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북핵 폐기 문제가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이러한 혼선은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은 4자 정상선언을 하자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을 보다 확실한 흐름으로 굳혀서 북한이 조속히 핵 폐기를 이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시간에 늦지 않게 밀고 가기 위해서는 정상들의 선언으로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종전선언의 명칭과 시기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종식과 평화구축을 위한 정상선언이라면 그 취지가 맞다면 명칭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노무현대통령, 2007.11.13. 기조연설).

18) 이러한 주장은 더 나아가 종전선언의 내용을 보다 덜 엄격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관계정상화를 전제하지 않고 종전선언만을 채택하거나, 종전선언의 내용을 평화협정에 포함시키는 경우, 또는 종전선언과 국교정상화를 동시에 선언하거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없이 바로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며 종전선언 채택 방식의 다양성을 강조한다(김만복 국정원장, 『국정브리핑』 2007.10.30).

결국 논란이 되고 있는 종전선언이라는 용어대신에 “전쟁종식과 평화구축을 위한 정상선언”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은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4자 정상선언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는 중대한 계기는 되겠지만, 종전선언이 담아야 할 실제적인 내용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남북정상선언에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정부 일각에서 당장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친 것은 조금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을 정확히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용어와 전략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4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종전선언이 아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개국 정상들의 평화선언’이라는 정도의 구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국 종전선언의 시기 문제는 단순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종전선언을 할 만한 상황적 조건이 무엇인가를 논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종전선언은 주로 북핵문제의 진전과 연결해서 고려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그 최적 시기는 북핵 폐기가 실현되거나, 혹은 북핵 폐기 과정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북핵 불능화가 달성되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분명한 전망이 설 때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행정부의 인식이나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이 정도의 여건은 조성되어야 미국도 종전선언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단순히 북핵문제만 진전되면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전체제의 근본적인 두 축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적대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선언은 최소한 현재의 정전상태에서 대결구도의 축을 이루는 준전쟁적(準戰爭的) 성격을 지닌 요소들이 해소되어야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간에는 현재의 군사적 대치상태에 대한 근본적 변화 필요하다. 예컨대, 휴전선과 NLL에서의 분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상호합의 혹은 이에 준하는 운용적 수준의 군비통제 상황을 조성하여 종전선언의 수준에 맞는 최소한의 남북군사관계를 실현해야 한다. 이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발생하거나, NLL을 둘러싸고 분

쟁이 발생했을 때 불어닥칠 심각한 역행적인 부정적 후유증을 차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한편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미 간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반 제재조치가 해제되고 국교정상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정도의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킨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그 내용에는 대체로 정전상태의 사실상의 종식과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 개시 선언,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의 의지 및 실천 방향, 북미관계 정상화 의지 및 일정 등이 담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외재적 변수이기는 하나 필요에 따라서 북핵 불능화 확인 및 북핵 해결에 대한 명확한 전망도 담을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독자적인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여건이 조성되면 추구할 수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독자적인 평화행사로써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면 그에 맞는 구체적인 한반도의 평화증진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북핵문제 하나만 연동해서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전선언 문제의 제기과정은 우리에게 정부가 특정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명칭을 제대로 붙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언어는 주체의 인식을 반영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처럼 이 용어가 가리키는 상황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명칭을 본래의 뜻과 다르게 사용할 때는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종전선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여건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현 단계에서 실현될 수 없는 과제를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구축과 관련한 핵심적인 용어들이 지닌 개념과 그 상호관계, 실현시기 등 쟁점사항에 대해

서 살펴보고, 필자 나름대로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필자는 특히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주체이자 당사자는 남북이나, 이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중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논리적, 전략적 차원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당사자주의가 지니고 있는 당위적 의미와 그 한계를 동시에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바탕을 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지하듯이 평화체제 논의를 위해 모였던 4자회담이 끝내 결렬된 것은 북한이 주한미군철수와 함께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당시나 지금이나 남한이 북미평화협정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처럼, 북한도 남북평화협정에 완강히 거부할 것이라는 현실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필자는 그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가 아니라 당사국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계기적 이벤트라는 인식에 기초해서 문제를 진단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 성사조건 등을 잘 살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4자 정상선언은 종전선언이라는 용어 대신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상선언’이나 기타 그에 부합한 다른 이름을 찾아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전선언은 부시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증진에 중요한 활용수단으로 부각되었다. 부시대통령은 북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하였고, 발언당시에는 아마 그리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교착상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난국 타개를 위해 이것을 이슈화하였다.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누구라도 그 이름에 맞게 내용을 채워 나가야 한다. 북핵, 남북군사관계, 북미관계 등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실현에는 미국의 의지와 이해가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미국의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 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거나 이를 위한 4자 정상회담을 여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자칫 북한의 핵 폐기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

미 간 긴밀한 의견조율이 종전선언 실현 여부의 핵심변수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자칫 망외(望外)로 얻은 소득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이 물건에 맞는 용처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에 용처를 우격다짐으로 맞추는 식으로 일이 전개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의 진전은 9·19 공동성명을 계기로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평화체제와 북핵문제를 선순환적인 순기능 관계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긴요하다고 본다. 북핵 문제가 진전되어야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가능하다는 일방적인 종속론적인 시각이나 북한과의 평화체제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 수 있다는 선평화협상론은 둘 다 균형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없다.

현 단계에서 북한은 평화협정 문제를 북핵문제의 결과로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쩌면 북핵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북핵문제를 이른바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산물로 보는 북한의 입장에서 체제보장의 관건으로 평화협정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논리일수도 있으나, 미국으로서는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핵 폐기 전에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결정적으로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 전에 평화협정 추진 쪽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잘 인식하여 북핵문제를 진전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진전시킬 계기를 포착해 나가되, 평화체제 논의나 북미관계 개선 등이 북핵 문제 진전에 또한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인식을 관련국과 공유하고 이 둘을 현실에서 유기적 순기능 관계로 정립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 과정을 추동해가는 주체라는 말의 뜻을 다시 새기고자 한다. 이 말은 북핵문제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이르는 단계에서도 남북관계가 병행적으로 진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관계 당사국들 간의 단순한 협정서 채택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함께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요컨대,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문제는 6자회담과 병행하여 논의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되,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남북군사문제에 대해서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개선시켜 가는 노력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안전보장회의. 2004.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 김일성. 1982. 『김일성 저작집 16』 (1962.1-1962.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 1984. 『김일성 저작집 28』 (1973.1-1973.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 1986. 『김일성 저작집 31』 (1976.1-1976.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7. 『글로벌 정상외교』. 서울: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3.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서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두산동아. 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Vol. 26. 서울: 두산동아.
- 송대성. 1996. 『한반도 군비통제』. 서울: 신태양사.
- 이종석. 1998.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올아카데미.
- 외교통상부. 2004. 『한반도 문제 주요현안 자료집』. 서울: 외교통상부.
- 정인홍·김성희·강주진. 1984. 『증보 정치학대사전』. 서울: 박영사.
- 고유환. 2007.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 과제와 전망.”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변영: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 김성배.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주변정세.”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변영: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 김영호. 2007.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쟁점과 과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통일연구원.
- 문정인. 1999. “김대중 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가전략』 제5권 2호.
- 박건영. 20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1호.
- 박명림. 2004.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민주법학』 제 25권
- 박종철. 200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1호.
- 백승주. 2006. “한반도 평화협정의 쟁점: 주체, 절차, 내용, 평화관리 방안.”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1호.
- 이 근. 2007.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대북정책의 모색』.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 이삼성. 2005. “한반도 평화협정: 북한 핵문제 근본해결로서의 평화협정의 틀과 윤곽.”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구축 방안』. 평화통일연구소.
- 이상현. 2006.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1호.
- 이종석. 2007a. “2·13 합의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정세와 정책』 2007년 4월호.
- . 2007b.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국가전략의 모색.”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대북정책의 모색』.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 임동원. 2007. “한반도 평화의 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기조연설. 2007년 3월 22일.
- 전재성. 2006.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한의 구상과 정책 비교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1호.
- 정성장. 200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쟁점과 전략.”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세종연구소.
- 조 민. 200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평화 프로세스.” 『통일정책연구』 16권 1호.
- 최영중. 2007.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론과 제도적 디자인.” 『국제관계연구』 2007년 봄호 제 2권 제1호.
- 한용섭. 2006. “군비통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선순환 관계를 위한 제언”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1호.
- 김만복. 2007. “중전선언 누가·언제·어떻게...” 『국정브리핑』(2007년 10월 30일) <http://korea.kr/newsWeb/pages/brief.html> (검색일: 2007.11.30).
- 노무현. 2007.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 『청와대 브리핑』 대통령 연설문 (2007년 11월 13일). http://www.president.go.kr/cwd/kr/ac_hive.html (검색일: 2007.11.30).
- 송민순. 2007. “장관내외신브리핑(10.24).”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ad.jsp> (검색일: 2007.11.30).
- 이영태. 2007. “노대통령 ‘4자 정상선언으로 조속한 북핵폐기 유도.’” 『국정브리핑』 (2007년 11월 13일) <http://korea.kr/newsWeb/pages/brief.html> (검색일: 2007.11.30).
- 조복래. 2007. “<초점> 한국戰 중전선언 논란과 美 입장.” 『연합뉴스』(2007년 10월 25일)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 (검색일: 2007.11.30).
- 조준형. 2007. “백종천 “중전선언, 평화협상 개시위한 정치선언.” 『연합뉴스』 (2007년 10월 24일)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html> (검색일: 2007.11.30)
- 조준형. 2007. “송외교 ‘美·中, 평화협정 보증인 자격 적절치 않아.’” 『연합뉴스』 (2007년 11월 2일)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html> (검색일: 2007.11.30).
- 최재석. 2007. “버시바우 ‘연내 중전선언 가능하지 않다.’” 『연합뉴스』(2007년 10월 8일)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
(검색일: 2007.11.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 대답”, 『로동신문』, 2003년 10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 담화”, 『로동신문』, 2005년 9월 20일.

“박길연 워싱턴 회견 일문일답”, 『조선일보 NKChosun』(2004년 7월 21일). http://www.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_id=7&res_id=49483&page=13 (검색일: 2007.12.03).

Lee Sanghee. 2007. “Towar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 Way Forward for the ROK-US Alliance.” CNAPS Presentation, May 2, The Brookings Institution. (<http://www.brookings.edu/events/2007/0502north-korea.aspx>).

Galtung, Johan. 1968. “Peace.”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1.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North Korea Suggests Peace Treaty to Settle Nuclear Dispute”, USA TODAY. May 13, 2004. <http://pqasb.pqarchiver.com/USAToday/access/636716421.html> (검색일: 2007.12.03).